

# 채무불이행자 등재제, 신불자 양산

### 조배숙 의원 “신보 등 공적금융기관, 7만명 등재·회수액 1.7%에 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이들에게 신용보증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 기관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도나 폐업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기의 기회는 주지 못할망정,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채무불이행자 등재 제도를 통해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현재 신보, 기보, 서울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기관에 의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람은 신보가 10,177명, 기보 5,278명, 서울보증보험 55,290명 등 총 70,745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5조 7,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부도나 폐업 등 이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들에게 채무이행을 강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은 전체 채무 불이행 금액 5조 7,680억원 중 993억원으로 1.7%에 불과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는 채권 회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수단으로 전락한 바, 이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신보나 기보 등 정

책금융의 역할은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뱃이 되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나 폐업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빚갚아라’ 협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실 효성도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채무불이행자 등재 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와 기보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기업의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기업들은 이 보증서를 갖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소상공인 등 개인 및 기업이 각종 상거래시에 필요한 신용공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증전문회사다.

/익산=정양원 기자

### 10만원 미만 학자금대출 못갚아 456명 신불자 돼

10만원도 안 되는 학자금대출 잔액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4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소액채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말 기준 주공금에서 관리 중인 채무자는 2만1918명, 잔존채권액은 157억원이다.

이 중 5만원 미만 채무자는 806명(채무잔액 1100만원), 10만원 미만은 1133명(8700만원)인데 10만원 미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456명이다. /뉴시스

# 김관영 의원 “예금보호한도 확대해야”

### “15년째 5000만원 제자리... 경제여건변화에 맞게 확대해야”

15년째 5000만원으로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여건변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관영(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의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년간 국내총생산액이 2배로 늘었으나 이를 예금보호한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을 등한시한 정부의 부작위”라고 지적하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현행 예금보호지침은 예금자보호액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적 반대여론

에 아랑곳 않고 공적거래대상 대기업 규제기준 완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내총생산 규모 성장”이라며 “같은 근거, 다른 국정을 펼치는 정부에 대기업보다 서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예금 보호 기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논의를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을 운용하면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고 있으며 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다.

/조선=문정곤 기자

# 아이폰7 예약판매 첫날 매진행렬

### 이통사, 보조금 조기 발표하며 대대적 공세 출시 당일 21일 실제 개통 비율에 관심 쏠려

아이폰7이 예약판매 첫날인 14일 조기 마감 기록을 세우며 순항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약판매에는 허수 지원자가 많은데 아이폰7 출시 당일인 21일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는 비율에 일찌감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아이폰7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을 조기 발표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이동통신3사가 1차 예약판매에 나선 이날 오전 KT는 5만대, LG유플러스는 2만대의 1차 물량이 모두 조기 마감됐다. SK텔레콤은 예약판매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동통신3사를 모두 포함하면 전체 10만대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아이폰7 예약판매를 세 차례 나눠 진행했다. 이날 오전9시 시작한 1차 예약판매는 20분만에, 9시30분부터 시작한 2차 예약판매는 1시간 만에 마감됐다. 3차 예약판매는 오전 11시부터 20일까지 물량 제한없이 진행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오전9시 예약판매를 시작한지 1분만에 각각 2만대 가입자를 넘어섰다.

KT는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 예약판매 시작 15분만에 우선예약자 5만명을 채우며 조기 마감했다. KT는 20일까지 일반예약판매를 이어간다.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이 발표된 후 애플 아이폰 7 예약판매가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중로구 kt 스퀘어에서 아이폰7 사전 예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아이폰7은 온라인 예약판매 오픈후 몇분만에 1차 예약분이 모두 풀려나갔다.

LG유플러스는 중간 마감 없이 20일까지 가입자를 받는다. LG유플러스가 이통사 최초로 진행한 아이폰7 카카오톡 예약판매 이벤트는 1분만에 7777명이 몰리며 성료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1일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7 출고가는 86만9000원(32GB), 99만9900원(128GB), 113만8000원(256GB)으로 정해졌다.

아이폰7 플러스 모델 출고가는 102만1900원(32GB), 115만2800원(128GB)원이다. 가장 대용량 모델인 아이폰7 플러스 256GB 모델은 128만3700원으로 고가다.

이동통신3사는 아이폰7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조기 발표하며 가입자 잡기에 나섰다. 아이폰7 128GB의 경우 이용자가 많이 쓰는 5만원대 요금 기준으로 SK텔레콤은 6

만1000원, KT 5만8000원, LG유플러스 6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24개월 약정 시)을 비교해봤을 때 아이폰7 시리즈는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유리하다.

자세한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 비교는 통신포털 스마트조이스(www.smartchoice.or.kr)와 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조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변경은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규모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예보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

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은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책정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13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 5000만원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080만원 수준이다. /뉴시스

#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법 문의 법령 해석집 배포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도 법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요?”

“기존 위험관리 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 갖춰 재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새롭게 2년이 부과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을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해석집은 8월1일 이후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88건의 답변을 모은 자료다.

해석집에 따르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장을 사내 이사 중에서 선임해도 된다.

또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할 경우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 임기 보장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밖에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

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에서 겸직할 기간은 중복해 산입하지 않는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은 반드시 별개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위험관리 책임자는 여신 심사부서를 직접관할하거나 최종승인 권한을 갖는 등 이해상충 우려가 큰 경우에만 겸직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후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을 통해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를 취합해 모두 212건을 기회 신했다.

또 법령해석 자문기구인 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해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해석방향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 적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석방향을 확정했다”며 “10월 말까지 업계의 추가 질의 사항에 지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